

제205회 영등포구의회  
2017년도 제2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김길자 의원 발의】



2017. 12. 5.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321호로 2017년 11월 13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7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영등포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3조)

나.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
(안 제4조)

다.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5조)

라.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 규정  
(안 제7조 ~ 제8조)

마. 관광정보센터내 전문인력배치 (안 제9조)

바.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(안 제10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관광진흥법」,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## 5. 검토의견

○ 이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관광산업을 육성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○ 주요내용으로,

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관광여건 조성 발전을 위해 종합시책 마련과 관광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관광진흥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,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며,
-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
- 안 제9조에서는 관광정보센터 내 영어·일어·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,
  -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과 보조금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검토결과, 본 제정 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,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

## 관광진흥법

**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**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

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**제48조의3(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)**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에너지·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 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

**제71조(관광특구의 진흥계획)**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 등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76조(재정지원)**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2 관광진흥법 시행령

**제59조(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71조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(이하 "진흥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1.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
2.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, 행사,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
3.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4.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서비스 개선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수립된 진흥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진흥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